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6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서명옥・김소희・박정하

강대식 • 조정훈 • 박준태

서천호 · 주호영 · 이인선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검사와는 달리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약물 운전 검사를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음주운전 검사와 같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술·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술"을 "술·약물(약물이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술에 취한 상태"를 "술·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운전자가 술·약물에 취하였는지"로, "호흡조사"를 "호흡조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로 한다.

제148조의2제2항 중 "술"을 "술·약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아 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제44조(술•약물에 취한 상태에 서의 운전 금지) ① ---술・약 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 물(약물이란 마약, 대마 및 향 기계관리법 | 제26조제1항 단 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 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한다. 이하 같다)-----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 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 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술·약물에 취한 상태---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 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 전자가 술・약물에 취하였는지 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호흡조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 조사</u>-----.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8조의2(벌칙) ① (생 략)	제148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
	음)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② <u>술·약물</u>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	
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